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운용에 관한 지침

전 문 개 정	90. 7. 16
공업진흥청고시	제90- 861호
개정 1991. 10.	고시 제91-1196호
개정 1992. 1. 8	고시 제92- 12호
개정 1992. 6. 10	고시 제92- 264호
개정 1992. 10. 10	고시 제92- 771호
개정 1993. 3. 29	고시 제93- 115호
개정 1993. 6. 15	고시 제93- 212호
개정 1994. 4. 4	고시 제94- 360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조업등록 공장심사) ①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등록을 함에 있어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구분별 시설기준(이하 “시설기준”이라 한다)에 의한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구비여부와 품질경영체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는 별표 1에 의거 실시하고 별표 서식 1에 준하여 그 결과를 공업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제조업 등록번호) 공업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용품제조업의 등록을 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조(소재지 변경신고) 등록 제조업자 또는 2종 전기용품 제조업자가 제조업을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하기 위하여 제조업을 휴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국내제조업체는 현 소재지 및 이전할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외국제조업체는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조업체 및 대표자명
2. 소재지
3. 제조업 등록번호(등록제조업자에 한함)
4. 변경하고자 하는 소재지
5. 소재지 변경에 따르는 제조업의 휴지기간

6. 시설 변경사항(등록제조업자에 한함)

제5조(형식승인번호) 공업진흥청장이 법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한 승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월로 한다.

제7조(형식승인유효기간갱신) ①법제11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만료 2개월전까지 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한 14호서식에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한 생산제품의 법정시료를 채취하여 지정시험기관에 시험의뢰한 접수증사본과 그 전기용품에 관한 종전의 형식승인서를 첨부하여 안전관리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지정시험기관은 당해 제품에 대하여 시험하고 제12조의 내용을 안전관리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안전관리협회장은 품질검사결과등 갱신요건을 검토하여 요건이 합당한 업체에 대해서는 갱신승인서를 작성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갱신발급을 요청함과 동시에 갱신요건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그 미달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업진흥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발급요청에 대해서는 갱신승인서를 발급하고 기준미달업체에 대해서는 갱신불허를 통보하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한다. 다만, 기술기준미달항목중 경결합사항에 대해서는 갱신과 동시에 제15조 제1항 3호에 의거 개선명령 조치한다.

제8조(제조업체협의회) ①안전관리협회장은 우수 전기용품의 생산보급을 하기 위하여 적정원자재의 공동구입, 최신시설의 공동발주, 신기술 및 공법의 개발·도입·보급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협회내에 품목별로 제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안전관리협회장은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운영규정
2. 협의회구성 대상품목
3. 협의회의 회원업체 및 임원명단
4. 사업계획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회는 매년 11월말까지 소속회원에 대한 다음년도 시판품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동계획에 따라 년 1회이상 사후관리(시판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9월전에 시험의뢰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절상품의 경우는 제품 출하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비회원업체 제품에 대하여는 공업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내 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협의회회원사 사후관리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④사후관리를 위한 시료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전관리협회 직원과 회원사소속 직원의 입회하에 공동으로 시중유통상품중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중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없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생산공장 또는 기타지역에서 채취할 수 있다.

⑤사후관리의 불응등 기타 사유로 협의회에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없는 업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

하고 사후관리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채취한 시료의 시험분석을 지정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지정시험기관으로 부터 제품 시험성적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제품별, 업체별, 시험항목별로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기준치와 시험성적서를 비교한 시험결과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기준미달업체에 대하여는 공업진흥청장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여 한다.

⑦공업진흥청장은 매년 1회이상 협의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협의회에 대하여는 주의·경고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주의·경고조치로는 사후관리의 실효를 거둘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후관리 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전기용품의 사후관리) ①공업진흥청장, 시·도지사 또는 공업진흥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와 제8조에 의한 제조업체협의회는 시중유통과정에서 채취가 가능한 사후관리용시료를 구입 지정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하여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업진흥청장이 인정하는 단체는 안전관리협회로 한다.

제10조(시료의 수량)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후관리용 시료의 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부품 또는 부속품은 제외할 수 있다.

1. 전선류, 전기온상선, 퓨우즈 및 전구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

2. 기타 전기용품은 n=1의 시험성적을 발급할 수 있는 최소의 갯수로 한다.

②제품 시험방법은 형식승인시 시험방법과 동

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시료의 보관등) ①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공업진흥청장, 시·도지사 또는 단체의 장(이하 “사후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시험을 의뢰하였을 때에 지정시험기관은 시료의 변형·고장 등으로 인한 변화가 없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지정시험기관은 사후관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 지정시험기관이 제9조 제1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험결과를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전기용품의 명칭
2. 전기용품의 형식구분 또는 규격
3. 시험기준치와 결과치
4. 전기용품의 표시사항
5. 기타 특기사항

제13조(시험결과에 따른 결함구분) ①공업진흥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결함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각호로 구분한다.

1. 최종결함
2. 중 결 함
3. 경 결 함

②제1호 내지 제3호의 구분은 별표 4 및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

제14조(사후관리결과 처분요령) ①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시험결과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처분을 공업진흥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요청할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결과 처분) ①공업진흥청장은 제9조에 의한 사후관리 실시결과 결함이 있는 경

우에는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취소(2종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 6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명령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명령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3.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거는 그 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별표서식 2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사항은 그 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업진흥청장이 개선명령을 받는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내에 개선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거명령을 할 경우 시·도지사는 별표서식 2에 의한 수거보고 내용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4항 제1호의 처분은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최종결합인 경우와 동일품목(이 경우 동일품목은 동일형식구분 또는 동일규격을 뜻한다)으로 제13조 제1항 제2호의 중결합이 연 2회이상 발생한 경우 및 별표 4 및 별표 5의 결합내용중 중결합이 3개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⑤제1항 제2호의 처분은 제13조 제1항 제2호의 중결합인 경우에 적용한다.

⑥제1항 제3호의 처분은 제1항 제3호의 경결합인 경우에 적용한다.

⑦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적합의무 위반으로 제1항 제1호의 처분을 할 때에는 동일 품목에 대한 형식승인을 1년간 불허할 수 있다.

제16조(제조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시·도지사 또는 공업진흥청장은 등록 제조업자에 대하여 정기사후관리 및 특별사후관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관할 전기용품 제조업체에 대하여 매년 1회 별표 1 “전기용품 공장검사 평가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실시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로부터 자체사후관리를 하도록 통보받은 제조업체는 별표 1 “전기용품공장검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자체사후관리를 실시하고 10일 이내에 별표서식 1 “전기용품 공장검사 보고서”와 제품(형식구분이 여러개일 경우 대표적인 형식구분)을 지정시험기관에 시험의뢰한 접수증사본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의한 제조업체협의회 구성품목으로서 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장이 인정하는 서류나, 동일년도에 형식승인 유효기간 갱신에 해당되는 형식승인서 사본을 전기용품 공장검사보고서와 같이 제출하면 동일품목에 대하여는 제품시험을 면제한다.

④시·도지사는 제조업체로부터 전기용품 공장검사보고서와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제품시험 성적서를 제출받아 동평가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기술기준 미달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업진흥청장에게 처분요청하여야 한다.

⑤특별사후관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공업진흥청장이 실시하며 해당품목을 관장하는 부서, 단체 및 검사기관과 합동

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장검사와 제품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1. 제품의 품질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 소비자단체 및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소비자의 안전침해우려 및 사회적 물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제2항에 의거 공장검사를 실시한 시·도지사는 월별 전기공장검사 실적을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사후관리면제)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표시허가공장
2. 품질경영촉진법 부칙 제4조에 의한 등급사정공장
3. 외국국가규격이나 외국유명규격의 인증을 획득한 업체
4.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 인증기업

②공업진흥청,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구성품목 생산업체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표시품
3. 외국국가규격이나 외국유명규격의 인증을 획득한 업체
4. 품질경영촉진법 부칙 제4조에 의한 등급사정상품

③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3년간 면제할 수 있다.

1. 품질경영상 수상업체
2. 산업표준화상 수상업체

제18조(시험수수료) ①지정시험기관은 공업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 안전관리 협회장,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험의뢰하는 경우에는 시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지정시험기관은 제7조의 형식승인유효기간 갱신, 제16조 제3항의 자체사후관리에 따른 제품시험시 시험수수료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수수료)와 공업진흥청장이 고시한 전기용품 시험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부 칙(1994. 4. 4)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전안

최고품질경영방침

적극적인 지속적개선을 통하여 고객에게 결함없는 제품과 서비스를 상시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만족시킨다.